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1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2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3. 18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기업과장 강도영)

가. 개정이유

-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, 상환기간 내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 연장(안 제18조)
 - 3개월 → 5개월
-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 유예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1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
 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- 예산 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[복지지원과-4493호(2025. 2. 3.)호]

조례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: 제16조(위원회의 구성)제2항 ⇒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조항 : 제16조(위원회의 구성)제2항 ⇒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 ⇒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5항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므로 미반영

○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55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1. 20. ~ 2025. 2. 10. 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 대출 완료기한 연장 및 융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8조) 융자금 대상의 선정 및 통보
 - 안 제3항에 규정한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

하도록 규정함.

- (안 제21조) 융자금의 상환

- 재난·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조문 중 ‘자금자원’ 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,
- 또한,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, 최대 유예기간 또는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, 제출안 제21조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8. 수정가결

붙 임 1. 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수정안

2. 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910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	2025. 3. 18.
발 의 자	김향숙 의원

1. 수정이유

-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운용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제21조제3항 중 “재난·재해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·재해”로, “자금자원”을 “자금지원”으로, “상환기간”을 “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”으로 수정함.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재난·재해” 를 “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·재해” 로, “자금자원” 을 “자금지원” 으로, “상환기간” 을 “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1조(융자금의 상환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(융자금의 상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군수는 재난·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	제21조(융자금의 상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·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1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2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하고, 상환기간 내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 연장(안 제18조)

- 3개월 → 5개월

나.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 후 상환 유예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 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[복지지원과-4493호(2025. 2. 3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5-155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. 20. ~ 2025. 2. 10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3개월”을 “5개월”로 한다.

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·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) ①·② (생략)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<u>3개월</u>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8조(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5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<p>제21조(융자금의 상환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1조(융자금의 상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·재해,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한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경제기업과장 강도영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지방자치법

제141조(회계의 구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